

기획조사 06-069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중남미편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해 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중남미편 -

요 약

세계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면서 각종 환경, 안전, 위생과 관련된 인증제도가 지역별, 국가별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국가의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는 기업들의 시장진출 선결과제가 되었으며 관련 인증취득은 진출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강제인증의 경우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등 제한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중남미 주요 3국의 인증 제도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통합인증보다는 각 품목별로 관련 기관들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 품목에서도 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들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증발급 신청 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식품류의 유형에 따라 4개 기관의 인증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시장 진출 시 반드시 동 사항의 적용여부 확인이 요구된다.

반대로 멕시코의 경우 1993년부터 시행된 국가 공식표준인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을 통해 국내 유통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운영 기관이 단일화 되어있어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NOM은 공산품 품질관리 제도로써 전기전자, 통신, 타이어, 가정용 기기 등의 제품을 멕시코 내수시장에 유통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하는 인증이며 NOM 인증 미필 시 제조, 수입, 수출, 판매업체에 대한 책임소재 확인과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중남미 지역은 유럽의 CE나 미국의 UL과 같은 지역공동 인증제도는 없으며 국가별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진출 시 해당 국가의 인증제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증 취득을 통해 시장진출 시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머리말 / 1

II. 아르헨티나 / 3

III. 브라질 / 13

IV. 멕시코 / 22

V. 시사점 / 48

I. 머리말

- 환경, 안전, 위생 등이 많은 국가들 내 정책형성의 중요 영향 요소로 등장하면서, 관련 기술규격을 증명하는 인증이 시장 진입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인증이 의무사항일 경우, 취득 불가 시 시장진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이 되고 있음.
- WTO체제 출범 후 각국의 관세는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추세임.
- 비관세장벽은 크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 원산지 규정 등의 전통적 분야와 인증, 환경, 문화(audio-visual)정책 등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내정책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해외시장을 5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 및 '취득절차'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업체들에게 관련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해당 5개 지역의 조사대상국가
 - 구주 : EU, 독일, 영국, 프랑스
 - 러시아/동구 : 러시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북미 : 미국, 캐나다
 - 아시아 :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이 중 본 보고서는 ‘중남미편’으로, 동 지역 주요국에 걸쳐 적용되는 인증과 서구 주요 국가에 별도로 적용되는 인증을 구분하여 살펴봄.

II. 아르헨티나

1. 제도 개요

□ 제도 설명

-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거나 △ 형식승인을 받거나 △ 관계당국에 제품 등록이 되어야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에는 통합 강제인증제도는 없고, 품목별로 표준인증 협회(IRAM), 산업기술청(INTI), 식약청(ANMAT)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증·등록·승인·허가를 받아야 함.

< 품목별 인증·등록·허가 필요사항 >

대분류	관계기관	세부품목	비 고
식 품	ANMAT	사람 식용 식품전반	- 수입품의 경우 △ 사전 등록 △ 수입 전별로 수입허가 필요
	IRAM	통조림, 주스, 치즈, 와인, 차 등	- 제조우수사례(BPM), 농업우수사례(BPA) 인증 (강제사항 아님)
	INTI	식품 전반	- 식품품질 및 가공공정에 대한 인증 (강제사항 아님)
	SENASA	동식물 식품 및 소모품, 농화학 폐기물	- 아르헨티나 검역청으로 인증보다는 검역관련 관리차원의 검사 실시
의약품	ANMAT	의약품 전반	- 의약품 사전등록 필요
의료기	ANMAT	X선기기,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전반	- 의료기술국(Direccion de Tecnologia Medica)에서 담당
	IRAM		- IRAM 표준 4220에 의해 인증
화 학	IRAM	PVC 제품, 안전유리 등	- IRAM DC PA 001, IRAM DC PA 002, IRAM F 054가 있음
완 구	IRAM	완구 전반(판매·무	- 완구 안정성 인증(IRAM F-275)
	INTI	료증정용 불문)	- 완구 안정성 인증
전기 전자	IRAM	전기제품, 전동공구, 고압·중압기기, 오	- IRAM 및 INTI 표준에 따라 안전 인증

		디오 등	
기계 금속	IRAM	유압기중기, 도로기계, 견인기기 등	- 안전인증
가 스	IRAM	가스제품 전반	- 가스제품 인증유형 : IRAM CD-PA-007
	INTI		- 아르헨티나가스공사(Energas)의 가스 장비 안전표준에 의함
통 신	CNC	휴대폰, 무전기, 위성통신장비 등	- 아르헨티나 통신위원회(CNC ; Comision Nacional de Comunicaciones) - 제품 형식승인, 판매허가 등 담당
수송 기기	CNR	자동차, 트럭 등	- 아르헨티나 운송규제위원회(CNR ; Comision Nacional de Regulacion del Transporte) - 형식승인 및 관리 등 담당
자동차부품	IRAM	자동차부품	- 안전성 검사
자전거	INTI	자전거	- 안전성 검사
	INTI	타이어·튜브	“
엘리베이터	INTI	엘리베이터 및 부품	“

○ 아르헨티나 주요 인증기관으로는 아르헨티나 표준인증협회 (IRAM)과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INTI)이 있음.

- 이외 기관은 수입·판매를 위한 등록, 검역 등을 담당하는 기관임.

2. 주관기관, 검사 및 시험기관



아르헨티나 표준인증협회

(IRAM ;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ion y Certification)

☐ 기관개요

○ IRAM은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 제품 등에 대하여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임.

- 이 기관은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 효력을 발휘함.

< IRAM 연락처 >

- 주소: Peru 552/556 (1068) C.F. Buenos, Aires, Argentina
- Tel/Fax: (54-11)4346-0600
- E-mail: iram@iram.org.ar
- 홈페이지 : www.iram.org.ar

○ 품목에 따라 IRAM이 독립적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와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INTI) 등과 공동인증을 하는 경우로 대별

- 공동인증 예 : 금속제품 IRAM-INTI, 자동차부품 안전 IRAM-AITA, 식품 IRAM-Fundacion ArgenINTA

○ IRAM은 자체 검사소를 가지고 있고, 품목에 따라 제3의 검사소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음.

< IRAM 인증마크>



< IRAM 인증분야 >

구 분	분 야	내 용	비 고
소비재 제품인증	화학제품	PVC 악세사리, 볼펜, 소화기충전물질, 반사지, 브레이크 패드 및 용액, PE/PRFV 튜브 안전유리 등 안정성 인증	강제사항

	완구	완구 안정성 인증	“
	농임업제품	목재, 복사지 등 종이제품 등	“
농식품 IRAM- Fundacion ArgenINTA (공동인증)	농식품 인증	햄버거, 달걀, 치즈, 닭고기, 차	선택사항
	BPM	제조우수사례 인증	“
	BPA	농업우수사례 인증	“
	PI	친환경적 농업에 대한 인증	“
	HACCP	식품 분야에서 위험과 관리의 임계점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
	BPM S.A.	식품부문 제조우수사례 인증	“
	P.O.	유기농 제품인증	“
전기·전자		- KTL을 통해 신청가능 ※ 전기·전자 제품 인증방법 참조	“
기계·금속		- 견인장치, 기중기 등 안전 - IRAM-INTI 공동인증	“
가스		- 가스관련제품 안전성 인증	“

□ IRAM 전기용품 안전인증 사례

○ 인증관련 법령 : 결정문(Resolucion) 92/1998

- 저압의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법령
- 아르헨티나 세관은 IRAM 또는 IEC(International Electricity Committee)에서 정하는 표준을 준수하는 전기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가함.

○ 안전규격 등록절차

- 국내에서 절차를 밟을 경우
 - IRAM과 협정을 맺은 기관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통해 할 수 있음.

- 이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라이선스 증빙서류와 함께 IRAM에 제출하고, 만약 KTL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KTL을 통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정도임.
- 아르헨티나에서 직접절차를 밟을 경우
- 아르헨티나 회사가 직접 수입품을 IRAM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함(소요기간 :약 6개월)
- ① 회사대표증명서제출 :아르헨티나회사로서 외국회사의 제품을 IRAM에 등록할 수 법적지위가 명시된 위임서류 제출
 - ② 등록신청서 제출 : 외국회사가 어떤 표준을 통해 생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첨부 필요
 - ③ 신청서 검토 : IRAM측에서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첫 번째 테스트 종합테스트 검사
 - ④ 정밀검사 : 검사계획에 따라 제품 정밀검사 실시
 - ⑤ 절차검사증명서 : 검사 초기단계상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90일간 효력을 가진 IRAM 검사증명서를 발행받아 상업적 용도로 제품 취급 가능

- ⑥ 실험테스트 실행 : 소비자보호/공정경쟁차관실내의 국내판매국 지정 테스트기관을 또는 IRAM의 담당자 통제아래 자사 테스트실에서 실험테스트
- ⑦ 검사증명서 발급 : 위의 모든 절차를 마친 뒤 IRAM 증명서 발급국에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라이선스 발급
- ⑧ 사후관리 : 검사증명서가 발행된 후 IRAM측에서 생산제품이 기본안전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정기적으로 품질테스트를 수행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

(INTI ;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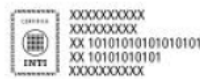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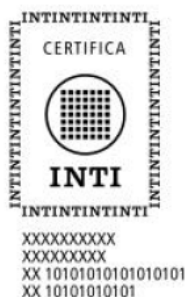
☐ 기관개요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설립근거 : Consejo Directivo No. 32/2001)으로 △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거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
- SGS, IRAM, LATU((Laboratorio Tecnológico del Uruguay) 등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완구 인증에서는 아르헨티나 완구협회(CAIJ), 스페인 완구공업조사협회(AIJU)와 협력 관계에 있음.

< INTI 연락처 >

- 주소 : Av. Gral. Paz 5445(B1650KNA) San Martin, C.C. 157
- Tel/Fax : (54-11)4724 - 6200/6300/6400
- Email : certific@inti.gov.ar
- 홈페이지 : www.inti.gov.ar
- 인증 소요기간 : 5 ~ 11개월

< INIT 인증마크>



< INTI 인증분야 >

분 야	업무내용
완구	- 완구 안전성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Resolucion) 163/2005
용기 (envase)	- 뚜껑 등의 재질이 위험한지 등 용기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730/1998
시멘트	- 건축용 시멘트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130/1992, 240/1992
전기제품	- 저압에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92/1998
신발	- 신발 각 재료 성분, 제조업체, 상표, 모델에 대한 라벨링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508/1999
포장지	- 포장용 종이에 대한 라벨링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653/1999
가스장비	- 천연가스, LPG 등 모든 유형의 가스에 사용되는 기기 및 악세사리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아르헨티나가스공사(Enargas) 표준

개인보호 장비	- 개인보호 용도의 장비, 수단 및 부품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896/1999
자동차부품	- 안전관련 자동차부품 및 요소에 대한 형식승인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91/2001
수입자동차	- 수입자동차 기술서류에 대한 검사 - 검사기준 및 근거 : 결정문 64/2001
우박방지용 그물	- 농작물 보호를 위한 설치조건 및 품질 등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법률 25174/99, 시행령 1552/2001
식품	- 모든 식품의 품질 및 가공단계에 대한 인증 - 강제 인증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음
에너지 라벨링	- 전기제품이 정해진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319/1999
자전거	- 자전거 판매를 위한 안전 인증 - 유아용 자전거 안전기준 규정 및 심사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220/2003, 91/2004
라텍스 페인트	- 라텍스(latex) 페인트의 납 함유량 검사 및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1088/2004
철강	- 콘크리트 철근 또는 건축용 철 구조물로 사용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404/1999
라이타	- 라이터 안전성 검사 및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77/2004
자전거용 튜브, 타이어	- 튜브 및 타이어에 대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153/2005
기계 · 장비	- 플라스틱 · 고무 사출기계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97/2006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및 부품에 대한 안전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 결정문 897/1999
기타 품목	-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INTI 인증절차(소요기간 : 5~11개월)

- INTI의 경우도 자체 검사소를 가지고 있고, 품목에 따라 제3의 검사소(검사인)에게 검사를 위탁하고 있음.

단계	절차	내용 및 관련서류	관련부서
[1단계] 인증신청	1.1 최초접촉	- 인증을 위해 INTI 접촉 * 인증신청서, 회사 및 제품정보	INTI(고객담당부서)
	1.2 인증평가 준비	- 인증신청서, 검사기준 등 파악 * 인증신청서, 제품정보, 검사목록 등	INTI(인증담당부서)
	1.3 서류준비 신청	- 서류준비 및 제출	“
[2단계] 평 가	2.1 샘플 제출	- 샘플 제출 * 견본수령증	검사소
	2.2 검사	- 검사 실시 * 검사결과보고서	“
	2.3 품질관리 검사	- 품질관리 검사(ISO 기준) * 품질 검사보고서	“
[3단계] 인증, 마크 발급	3.1 서류 심사	- 검사결과 등 서류 심사 * 인증신청서, 제품정보, 견본수령증, 검사결과보고서, 품질검사 보고서 등	INTI(인증부서)
	3.2 인증, 마크 발급	-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 발급	인증위원회
[4단계] 사후관리	4.1 제품 검사	- 공장 또는 시장조사 * 검사보고서	인증부서
	4.2 품질관리 검사	- 품질관리 검사(ISO 기준)	“
	4.3 인증 연장		“

3. 미 이행 시 제재사항

☐ 수입통관 금지 :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음.

☐ 소비자 보호법(법 24240) 제재

- 벌금 : 500 ~ 500,000 페소 (이익의 3배 해당액 벌금 부과)
- 인증 위반 제품 압수
- 최대 30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폐쇄
- 최대 5년까지 국가계약 제한
- 영업상 향유한 각종 권한 박탈

□ 인증기관 제재

- 인증기준과 다른 제품 판매, 품질관리 미흡,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부착, 인증마크 미부착 등 인증관련 규정 위반시 건별로 사안별로 심사하여 벌칙이 부과되고 있음.

< 유통업체 COTO 제재사례 >

- 자동차용 냉각수는 아르헨티나 생산 또는 수입품을 불문하고 IRAM 표준 41350, 41368, 41369에 의해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아르헨티나 최대 하이퍼마켓의 하나인 COTO 사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용 냉각수를 판매하다가 적발됨
- IRAM은 이 건을 인증위원회(CGC)에 회부, COTO 사에 대해 60,000 페소(U\$20,000 상당)의 벌금을 부과함

III. 브라질

1. 제도 개요

☐ 제도설명

-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수의 품목만이 인증 취득을 의무화 함.
- 공인기관의 각종 검사를 거쳐 강제적인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일부뿐으로(하기 리스트 참조), 브라질 정부는 품질 및 안전 여부가 중요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로 인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에서는 국제적인 인증인 IEC, ISO 등의 규정에 준수하여 품질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브라질 자체 품질 검사인 SBAC(Sistema Brasileiro de Avaliação de Conformidade)의 규정도 적용하고 있음.
- 인증기관의 경우 INMETRO, IPEM 등을 비롯한 국내 기관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국내에서 인정
- 현재 INMETRO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미국 등의 인증기관과 MRA 를 체결하였으며,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WTO의 원칙에 근거하여 품질인증 검사를 위해 적용하는 규정은 국산품이나 수입품 구분 없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 관련 제품 대부분의 경우 ANATEL(국가정보통신국)을 통해 강제인증 취득 및 업체 등록을 마쳐야 브라질 시장 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2. 주관 기관, 검사 및 시험 기관

1) INMETRO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Normalização e Qualidade Industrial) : 도량형 및 품질 관리국

- 동 기관은 통상산업개발부 소속으로 본부는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 위치함. 각종 제품의 품질검사를 주관하며, 기준에 합당한 제품에 한해서 품질인증서를 발행함. 동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각종 제품의 물리 화학적 도량형을 연구, 표준 도량형을 규정.
 - 각 업체에게 제품 관련 표준규정을 통보, 업체로 하여금 항상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문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기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공인된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하며 인증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품질 인증 :
 - INMETRO의 규정에 따른 품질 인증
 - 업체가 자체 실시한 검수 시험 결과 검토 및 품질 인정
 - 공인된 기관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게 품질보증 실(Seal) 부착

2) IPEM (Instituto de Pesos e Medidas) : 도량형, 품질관리국

- 주정부 소속 기관으로 INMETRO와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NMETRO와 더불어 각종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을 검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각 주별로 별도의 기관이 있음. 상파울루 주의 경우 IPEM-SP (IPEM 상파울루 지국)이 있음.

3)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 외 전문 인증기관

- OCS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Qualidade)
 - 특징: 시스템의 품질 인증
 - 적용 규정: ABNT, ISO9001
 - 기관수: 브라질(29), 아르헨티나(1), 베네수엘라(1), 우루과이(2), 미국(1)
- OCP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de Produto)
 - 특징: 제품 품질 인증
 - 적용 규정: 제품에 따라 각종 국내 및 해외 규정을 적용
 - 기관수: 브라질(50), 아르헨티나(3), 코스타리카(1), 베네수엘라(1)
- OCA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Gestão Ambiental)
 - 특징 :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
 - 적용 규정: NBR ISO 14001
 - 기관수: 브라질(17), 아르헨티나(1), 미국(1), 우루과이(1)

- OHC (Organismos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Gestão da Análise de Perigos e Pontos Críticos de Controle)
 - 특징: 식품안전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ABNT NBR 14900
 - 기관수: 브라질(1)

- OPC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Pessoas)
 - 특징: 인력품질 인증
 - 적용 규정: SBAC
 - 기관수: 브라질(7)

- OCF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Manejo de Florestas)
 - 특징: 삼림관리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NBR 14789
 - 기관수: 브라질(2)

- OCE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NBR 15100)
 - 특징: 우주공학 관련 프로젝트, 건축물,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 적용 규정: NBR 15100
 - 기관수: 브라질(3)

- OCQ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QS9000)
 - 특징: QS 9000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QS 9000
 - 기관수: 브라질(11), 아르헨티나(1)

- OCO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de Empresas de Serviços e Obras na Construção Civil (SiAC/PBQP-H))
 - 특징: 건축공사 관련 품질인증
 - 적용 규정: PBQP-H
 - 기관수: 브라질 (9)

4)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 국가정보통신국

- 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통신 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함. 통신기기 업자들은 동 기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 기관을 통해 품질인증 및 등록 절차를 마쳐야 브라질 시장내 유통이 가능함.

3. 강제인증 품목

- 강제인증은 제작 과정이나, 사용법, 유통과정에서 개인 안전이나, 공중위생,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함. 현재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취득 품목은 총 42개로 다음과 같음.

인증 품목 (2006년 4 월 기준)	
강철봉 및 강철사	교류 형 안전장치(stabilizer) - 250V, 3KVA 이하
전기 흡수기	소화기
아동용 자전거	제조 및 수입 과정
장난감	디젤 오일용 필터
*안전 여부 검사	안전 성냥
PVC 케이블 (1KV이하)	퓨즈
케이블 (750V 이하)	가정용 아날로그 방식 전류 차단기 (440V 이하)

모토 사이클 용 헬멧	우유 (이유식) 병
버스 차체 *규격 검사	가정용 LPG 가스용 플라스틱 호스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철제 실린더(불합하지 않은 모델)	가정용 아날로그 식 플러그 및 콘센트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경합금(Light Alloy) 실린더	승용차, 트럭, 버스용 타이어 신제품
연료 주입 시스템 부속품	모토 사이클용 타이어
차량용 천연가스 주입 시스템 부속품	화물차용 중고 타이어
PVC로 감싼 컨덕터(conductor) (전압:450/750V)	라텍스 콘돔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튜브 형광등용 스타터(Starter) - 교류식
컨테이너 탑재 장치 *제조과정 검사	튜브 형광등용 스타터(Starter)
차축(Vehicular axle) *제조과정 검사	철제 가스통 (250 L 이하)
알코올 용 플라스틱 포장 용기	LPG 가스 압력 조절기(4 kg/h 이하)
안전성냥 육로 수송용 포장용기	주유소용 지하 연료 저장 탱크
위험물 육로 수송용 포장 용기	비금속 소재 차량 연료 지하 수송용 튜브
폭발 위험 환경 사용용 전기 기기	컨테이너 수송용 차량 * 제작 및 설치
전기의료기기	차량용 안전 유리

자료 :INMETRO

- Anatel이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이 3개 분야로 분류됨.

- I -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
-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 III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 (router) 등

4. 강제인증 승인 절차 (INMETRO, IPEM 인증)

① 인증 신청 양식지 (formulario 12) 작성

- OCIPEM (<http://www.ocipem.sp.gov.br/>)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증빙서류 [Contrato Social(업체 대표, 재무구조 등을 명시한 서류), CNPJ(사업자 등록증)] 구비

③ 업체 대표 서명이 날인된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OCIPEM에 우편 송부 또는 직접 제출

④ 인증 취득 신청 절차 통보

- 인증 신청서 검토 후,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서 OCIPEM은 인증 취득 신청 절차 및 검사 비용 등을 통보

⑤ OCIPEM은 각종 제품 품질 검사 결과를 종합, 인증 승인 가능성을 판단함.

5. 품질 보증의 유형

- **품질 인증(Certificacao)** : 시스템 또는 제품에 관련된 인증으로, INMETRO가 인정하는 시험 기관을 통해 각종 품질 테스트를 마친 후 취득함.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품목은 물론 제조(수입)업체가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납품업체 품질보증서(Declaracao do Fornecedor)** : 제조업체 또는 납품업체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로, 대부분의 구매 업체는 INMETRO의 검토 및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공정검사(Inspeccao)** :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로 구매업체의 검사관 또는 INMETRO가 인정하는 전문 검사관이 납품업체를 방문하여 제조 환경 및 공정을 검사함. INMETRO로부터 품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중 일부임.
- **품질보증마크(Etiquetagem)** : 각종 테스트에 합격한 후 취득할 수 있는 품질보증마크로 INMETRO의 로고가 부착됨. 업체들이 유통 및 판매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인증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단, 품질보증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유통할 때는 INMETRO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품질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품을 모두 압수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품질 테스트(Ensaaios)** :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 또는 구매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INMETRO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다양한 품질 테스트가 실시됨.

6. 미 이행 시 제재 사항

-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모든 제품은 INMETRO가 보장하는 품질 보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됨.
- INMETRO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압류 처분을 당함.

- 품질인증 미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120일 내에 해당 제품은 무기한 압류 처분을 당하며, 제조업체 또는 수입 업체는 정식으로 고발 조치됨.

IV. 멕시코

I. 제도 개요

NOM 제도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수입품의 경우 NOM 마크 부여심사는 관세국(DGA) 또는 일선 세관에서 담당하며 국산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청(PROFECO)에서 NOM마크 획득여부를 심사

☐ 제도 목적

- 멕시코 공식표준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마크 제도는 1993년 10월 첫 시행된 품질 및 안전성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 유통의 규제를 목적으로 함.
- 멕시코 내 유통되는 제품이 갖춰야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임.

☐ 운영 배경

1) 대내적 요인

-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품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성 제기

-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풍토 조성 -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 환경 훼손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와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 NOM 획득 품목과 非획득 품목을 차별화함으로써 멕시코 기업의 경쟁력 제고노력을 유도.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新시장 확대 도모

2) 대외적 요인

- 경제개방조치 이후 가열되는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맞서 자 국상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 수입품의 무분별한 자국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 받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주요 내용

-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이 사전검 사 대상
- 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NOM마크를 획득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서 유통가능
- NOM제도는 검사대상 품목을 안전검사대상 제품 및 라벨링 대상 제품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① 안전검사대상 제품 : 안전요건품목 (Norma de Seguridad)
 - *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환경 훼손우려가 있는 제품
- ② 라벨링대상 제품 : 라벨링요건품목 (Norma de Etiquetado)
 - * 제조 및 유통정보 표시를 위해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
 - ※ 안전요건 품목과 라벨링요건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II. 주관기관 및 검사기관

☐ 주관기관

- 멕시코 NOM제도는 통상산업개발부(SECOFI) 산하 표준국(DSN/Dirección General de Normas)에서 주관하고 있음.
- 표준국(DGN)은 통상산업개발부(SECOFI) 공업표준 및 상역 서비스 담당차관 휘하 內局으로 설치되어 있는 연방정부기관임.

☐ 주요업무

- 표준화 (Normalización)
 - 품목별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및 전파
- 인증 (Certificación)
 - 안전검사 실시 및 NOM마크의 승인, 발급
- 판정/자격부여 (Acreditación)
 - 검사/시험기관 자격부여 및 감독

○ 기타 주요업무

- 표준화 자문위원회(CCNN)운영, 조정, 주재
- 표준규격 안 마련 시 관련기관 및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아울러 표준화 관련 자체조사 및 분석활동 전개
- 계측(Medición) 및 라벨링 검증(Verificación) 지침 마련
- 유관기관/단체의 표준화, 인증, 검증 등 관련 제반활동 조정

□ 제도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기관 및 주기

○ 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기관 : 표준국(DGN)

- NOM 마크제도 운영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업무는 표준국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되 해당품목별로 관할 9개 정부기관과 각각 협의하여 공동추진
- 9개 기관 : 사회개발부(SEDESOL), 환경.자원.수산부(SMARNAP), 에너지부(SE), 통상산업개발부(SECOFI) 여타 관련 부서, 농목축.농촌개발부(SAGAR), 통신교통부(SCT), 보건부(SS), 노동.사회보장부(STPS), 관광부(SECTUR)

○ 운영기준 개정 주기 : 5년

- 매 5년마다 정기 심사하여 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변경함

III. 검사 및 시험기관

1. 검사 및 시험기관

가. 검사 및 시험기관 개요

- 검사/시험기관은 NOM마크 신청 시 안전검사 또는 라벨링 검사 등과 함께 NOM 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Instituto de Certificación)**과 NOM 신청 예비단계로 이용하게 되는 **실험소(Laboratorio)** 등으로 구별됨.

나. 특징

- 인증기관과 실험소는 모두 통산부(SECOFI)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음.
- NOM 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은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협회(NYCE),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협회(ANCE), 건축자재 표준화 인증기구(ONNCCE), 떼길라 규제원(CRT) 등이 있음.
 - 그러나 ONNCCE는 비강제검사제도인 NMX 마크제도 위주로 운영되며 CRT는 떼길라 단일품목에 한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 관련 NOM 인증기관은 NYCE와 ANCE 2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2. 주요 검사기관 및 절차

가. 주요 기관

☐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Electrónica, A.C. (NYCE)

- 전자제품, 전산정보 및 통신관련 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 등 검사시행 및 NOM 발급
- 1994년 설립된 전자, 정보, 통신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9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97년 말에는 타이어 등 고무 분야도 포함

☐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del Sector Electrico, A.C. (ANCE)

-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
- 전기제품, 가스 관련제품, 가정용 기기 등 분야 검사시행 및 NOM 발급

※ 기타부문은 통산부표준국(DGN) 인증과에서 검사/시험 직접 시행

나. 검사 및 시험기관 이용방법

☐ 국외에서 이용하는 방법

-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하며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APODERADO LEGAL)을 세워야 함.
- 법정대리인으로는 동 분야 전문 법률사무소(BUFETE)들이 주로 이용되며 법률사무소별 수속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다. 검사/시험 소요기간

1) 안전검사 대상품목 (Norma de Seguridad)

- 검사대상품목이 신제품인 경우
 - DGN이나 NYCE, ANCE 모두 인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검사완료, 인증서가 발급됨. 단, 제출서류에 하자(Deficiencia)가 없어야 하는데 하자 발견 시 미비점을 적시하여 서류 반송됨.
-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활품, 단종품 등인 경우
 - 인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인증서 발급되며 제출서류상 하자 발견 시 미비점 적시, 반송

2) 라벨링(상업정보) 검사품목 (Norma de Etiquetado)

- ANCE :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NYCE :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라. 검사/시험 소요비용

1) 안전검사(Certificación)의 경우

- 검사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NYCE 의 경우 최저 1,748 페소(약 US\$ 158)에서 최고 3,560 페소(약 US\$ 323)가 소요
- ANCE의 경우 품목별로 최저 1,821페소(약 US\$ 165)에서 최고 3,643 페소(약 US\$ 331)이 소요
- DGN은 평균 1,628 페소(약 US\$ 148) 소요

2) 라벨링(상업정보) 검사 (Verificación)의 경우

- NYCE는 379 페소(약 US\$ 34), ANCE는 575 페소(약 US\$ 52) 소요

3) 시험소 검사 (Prueba de Laboratorio) 비용

- 품목별로 비용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1,500페소 ~ 5,000 페소가 보편적임.

IV. NOM 마크 취득절차 (강제인증 승인절차)

1.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가. 대 표준국(DGN) 신청시 서류

- 안전검사 신청서
- 검사서비스료(인지대) 납부 영수증(Comprobante de Pago de Derechos) 원본
- 연방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인시험소 (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 (Informe de Prudba) 또는 의견서(Dictamen)
 - NOM 신청 전에 견본품(3개)을 공인시험소에 제출하여 긍정 소견서나 적격판정 검사보고서를 사전에 득한 후 NOM 신청서 등 여타서류와 함께 NOM 발급기관(DGN)에 제출
 - 공인시험소는 통산부가 품목별로 지정/관리함
-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명세서 (Documentación Técnica)
 -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a) 및 편람(Manual)
 - 팜플렛, 기술 사양서, 설치명세서, 품질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Diagrama Electrónico) 등

○ 품종선언서 (Declaración)

- 신청품목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나. 대 NYCE 및 ANCE 신청서 서류

1) 안전검사(Certificación) 신청 시

☐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의 경우

- 안전검사 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 Certificación)
- 안전검사 신청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de Certificación)
- 연방납세자등록증 (Cedula del RFC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Prueba) 또는 소견서(Dictamen)
- 각 NOM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명세서 (Documentación Técnica)
- 품종 신고서

2) 라벨링 검증(Verificación) 신청 시

☐ 라벨링 요건품목(Norma de Etiquetado)의 경우

- 라벨링(상업정보) 검증 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 Verificación de Información Comercial)

- 라벨링 검증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de Verificación de Etiquetado)
- 회사정관(Acta Constitutiva) 사본
- 연방 납세자 등록증(Cedula de RFC/사업자등록증) 사본
- ※ 안전검사 신청 시나 라벨링 검사 신청 시 공히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Carta Poder) 추가 필요

2. 신청에서 승인획득까지의 과정

가. 평가방법(평가유형)

- 예비평가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검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 평가 시에는 서류심사 형태로 이루어짐
- 일단 NOM을 획득한 뒤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평가는 기존 NOM 획득제품이 NOM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임.
 - 매년 실시되며 공장방문(내국산의 경우) 내지 창고방문 또는 판매현장방문(수입품의 경우)의 형태로 이루어지되 사전 통지 후 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짐.

나. 승인절차 (NOM 획득절차)

1) 예비신청

- NOM을 획득코자 할 때 내국산의 경우에는 통산부 지정 품목별 공인시험소에 바로 시험의뢰를 하면 되지만 수입품의 경우에는 먼저 DGN 등 NOM 발급기관에 견본 수입허가 신청을 내야함.

- 견본 수입수량은 품목별 해당 NOM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 위한 시험소 검사의뢰용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함.
- 견본수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각 기관별 견본수입 허가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시험소는 해당 공인시험소 중 1개처를 신청자 임의로 선정할 수 있음.

기관	제출서류	신청수수료	처리기간
DGN	신청서 *신청회사레터지 사용 必	무 료	3~7 근무일
NYCE	견본수입신청서	\$184 페소	24시간 이내
ANCE	견본수입신청서	\$276 페소	48시간 이내

※ 동 신청서상에는 제품형태,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즈번호, 원산국명, 발송국명, 통관세관명, 견본개수, 선택공인시험소명 등 명기 필요

- 승인을 득하면 견본을 들여와 기 신고한 공인시험소에 시험검사를 의뢰함.

2) 예비평가

- 표본검사를 의뢰받은 공인시험소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면밀 분석 후 적부 소견서 작성
 - 기준미달 불합격 시에는 의뢰자가 미비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미달내용을 기입한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및 적부소견서 발급

3) 본 신청

- 의뢰자는 DGN 또는 ANCE, NYCE 등 NOM 발급 인증기관에 출두하여 각종 NOM 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함.

4) 본 평가

- 인증기관은 제출된 제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소관부서로 이첩
 - 소관부서에서는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면밀 검토,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함. 이때 제품의 품질 및 특성 뿐 아니라 생산과정, 유통 및 A/S, 창고 보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5) 평가회의

- 평가 종료 후 최종판정에 앞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 회의를 개최하며 의뢰자 또는 대표자를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시행, 의문점을 해소함.

6) 승인서 교부

- 기준 충족 판정 시 NOM 인증서를 발급하며 미 충족 시 사유를 명시한 불합격통지서 발부, 미비점 보완 후 재신청 유도함.

3. 공장검사(현장검사) 내용

가. 현장실사여부 : 사전 미실사, 사후 실사

- NOM 인증서 발급 신청단계에서는 표본검사 및 서류심사로 하되 NOM 교부 이후 계속적인 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1회씩 현장실사를 실시
- NOM 최초획득 후 NOM 효력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 시 DGN 등 인증기관에서 불시에 공장 또는 창고, 판매소 등 현장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 검사방법, 검사범위 등을 설명한 다음 NOM의 계속적 준수여부를 실사하게 됨.
- 동 불시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될 경우 NOM인증증 상실키게 되며 적격판정을 받아야 NOM 효력이 연장됨.

나. 현장심사일수

- 현장실사는 불시에 시행하되 평일 근무시간 중에만 이루어지며 실사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짐.
- 보통 1일~3일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공장실사인 경우 2~3일, 창고나 판매소 실사인 경우 보통 하루에 끝남.

다. 현장심사방법

- 현장심사는 현장실사 위주로 진행되나 실사로 부족한 경우 또는 실사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즉석 요구, 서류검사를 병행함.

- 현장실사는 무작위 표본검사(Muestreo Aleatorio), 육안검사, 추출표본의 상업정보 분석 등 검사형태로 진행됨.
- 현장심사가 끝나면 심사결과의 적부성에 관계없이 심사기관장이 서명한 현장검사필증(ACTA)이 발부되며 정밀 심사분석 후 적격판정이 나면 현장검사일로부터 21~35 근무일 내에 NOM 갱신인증서(Certificado)를 발급받게 됨.

4. 불합격 시 처리내용 및 재시험

가. 불합격판정 및 재시험

- 제반평가단계에서 서류상 하자로 실격당하거나 NOM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 처리될 경우 부적격사항을 보완하여 언제든지 재시험을 신청 가능
- 불합격 시에는 어떤 사항이 기준에 미비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기관장 명의로 통지서가 발부되며 재시험 절차는 동일

나. 판정불복 시 재심 청구

- 시험/인증기관의 불합격판정 사유에 대해 근무일기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험/인증기관인 ANCE 및 NYCE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시험/인증기관은 불복신청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를 갖고 있음.
-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동 기관 관할관청 주무부서(통산부 표준국장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관할관청 주무부서가 동 이의신청 서류 사본을 해당 시험/인증기관으로 이송하면 해당 기관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해야 함.
- 주무부서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 후 시험/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담당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음.

5. NOM 신청에서 취득까지 소요기간

☐ 예비신청단계 소요기간

- 시험소에 견본검사를 의뢰하여 시험분석결과 보고서 및 적부소견서를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보통 4주정도 소요

☐ 본 신청단계 소요기간

- NOM 인증서 발급기관에 NOM을 신청하면서부터 이를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근무일 기준 약 10~15일이 소요

<기관별 NOM 취득 소요기간>

기 관	DGN	NYCE	ANCE
총 소요기간	약 39~43일	약 37일	약 38일

☐ 기관별 총 소요기간

- 견본수입 승인신청으로부터 예비신청을 거쳐 본 평가 완료 및 NOM 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을 합산해보면 기관별로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남. 단, 견본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개로 함.

V. NOM마크 미취득시 제재사항

1. 제조, 수입, 수출, 판매업체에 대한 책임소재

- NOM마크 의무 취득대상 제품으로서 NOM인증없이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최종책임은 내국산품일 경우 제조업체가, 수입품일 경우 수입상이 져야함.
- 수출업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는 강제검사 대상인 멕시코산 수출품을 NOM마크 획득 없이 수출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기타 내국산품의 경우이나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에 책임이 전가되지 않음.
- 판매제품이 NOM 취득대상품목이나 인증을 필하지 못한 제품이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압수 및 벌금부과 등 제재를 따름.
- 그러나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품은 압수당하지만 벌금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상에게 부과되며 압수당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상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2. 제재내용

- 수입품의 경우 NOM마크 미취득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수입통관이 금지되고 제품은 세관에 억류됨. 이 경우 물품을 반송하든가 NOM마크를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 통관을 진행하든가 양자택일해야함.

-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물품압수는 물론 무거운 벌금까지 물어야 하나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은 부과되지 않음.

☐ 물품 압류

- 내국산품의 경우이나 불법통관 수입상품의 경우 NOM마크 미취득 상태에서 물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경우 물품압류는 물론 위반정도에 따라 무거운 벌금 부과
- 단순 판매업자의 경우 NOM 미취득제품의 판매가 비의도적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입상이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압수물품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나 제조업체는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함.

※ NOM 취득여부 감시활동은 소비자보호청(PROFECO)에서 시행

☐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 NOM 미 취득제품 취급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매현장에서 체포되어 최장 36시간 구금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담당책임자나 수입상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됨.

☐ 벌금부과

- 벌금(MULTA)은 위반형태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되어 부과
- 벌금부과 기준은 법정 1일 최저임금(Salario Mínimo de 1 día)의 배수로 산정

- 참고로 2006년 8월 멕시코 1일 최저임금은 A지역의 경우 48.672 페소, B지역의 경우 47.161 페소, C지역의 경우 45.808 페소임. 멕시코시티는 A지역에 포함.

<NOM 미취득 제품유통 벌금부과 기준>

벌금구분	적용위반내용
20~3,000배	NOM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제시 경우 등
500~8,000배	NOM 규정내용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시 등
3,000 ~ 14,000배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사기를 친 경우 등
5,000~20,000배	보건위생, 생명 및 안전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 등

< 참고 > 주요 품목별 제도내용

1) 보호신발(안전화)의 기술표준

- 대상품목 : 노동자들이 신는 보호신발(안전화)
- 제도유형 : 기술규정
- 관할기관 : 노동.사회보장부 (STPS)
- 근거규정 : NOM-113-STPS-1994, 1996.1.22일자 관보
- 내용요약 :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안전화의 최소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특성 등을 명시
- 시행일 : 1996.1.23

2) 섬유류의 라벨링 제도

- 대상품목 : 섬유 및 의류, 액세서리
- 제도유형 : 라벨링제도
-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SCFI/SECOFI)
- 근거규정 : NOM-004-SCFI-1994, 1996.1.24일자 관보
- 내용요약 : 멕시코 섬유/의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승인 및 멕시코 영토내 판매를 위해서 섬유, 의류 및 액세서리류에 부착하는 상업적 정보를 명시
- 시행일 : 1996.2.12

3) 전기.전자제품 및 가정용 전기기구의 라벨링제도

- 대상품목 : 전기.전자제품, 가정용 전기기구
- 제도유형 : 라벨링제도
-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
- 근거규정 : NOM-024-SCFI-1994, 1999.1.15 개정내용 관보

- 내용요약 : 멕시코 국내의 전기.전자/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멕시코 영토 내에서 해당 제품 판매 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품에 명시해야 할 상업적 정보(사용법, 주의사항, 보증조건 등)를 설정
- 시행일 : 1999.3.15

4) 온수기의 기술표준

- 대상품목 : 온수기
- 제도유형 : 기술규정
-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
- 근거규정 : NOM-027-SCFI-1994, 1995.1.12일자 관보
- 내용요약 : 최대용량 11,562 KJ/H(36,200 kcal/h) 이하이면서 LPG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온수기의 기술명세서 및 시험방법 등을 명시

5) 장갑의 기술표준

- 대상품목 : 전기취급시 사용되는 고무장갑
- 제도유형 : 안전 및 품질요건
- 관할기관 : 노동 사회보장부
- 근거규정 : NOM-118-STPS-1995, 1996.4.26일자 관부
- 내용요약 : 전기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장갑의 최소안전기준 및 품질요건과 시험방법 등을 규정

6) 성냥의 안전기준

- 대상품목 : 성냥
- 제도유형 : 안전요건
-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
- 근거규정 : NOM-118-SCFI-1995, 1996.7.5일자 관보
- 내용요약 :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성냥의 안전요건 명시

7) 향수 및 미용제품의 라벨링 제도

- 대상품목 : 포장된 향수류 및 미용제품
- 제도유형 : 라벨링제도
- 관할기관 : 보건부
- 근거규정 : NOM-141-SSA1-1995, 1996.7.1일자 관보
- 내용요약 : 향수류 및 미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사용할 때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위생 및 라벨링요건 규정. 동 제품의 제조 및 수입과 관련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동 규정(기준)을 준수해야만 함

8)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기준 및 라벨링 제도

- 대상품목 : 중앙집중식 에어컨
- 제도유형 : 에너지효율기준 및 라벨링
- 관할기관 : 에너지부
- 근거규정 : NOM-011-ENER-1996, 1996.7.26일자 관보
- 내용요약 : 중앙집중식 에어컨의 최소에너지효율성 기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및 라벨링요건을 명시

9) 타이어의 안전기준

- 대상품목 : 타이어(경트럭, 밴, 중장비, 버스 및 트레일러 등)
- 제도유형 :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 관할기관 : 통신교통부
- 근거규정 : NOM-016-SCT2-1996, 1996.9.9일자 관보
- 내용요약 : 멕시코에서 운행되는 경트럭, 밴, 중장비, 버스 및 트레일러용 타이어의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명시

10) 냉장고 및 냉동고의 에너지효율기준

- 대상품목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 제도유형 : 에너지효율기준
- 관할기관 : 에너지부
- 근거규정 : NOM-015-ENER-1997, 1997.2.13일자 관보
- 내용요약 : 밀폐형 모터컴프레샤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최대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소비량과 총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라벨링요건 등을 명시

11) 변압기의 에너지효율기준

- 대상품목 : 변압기
- 제도유형 : 에너지효율기준
- 관할기관 : 에너지부
- 근거규정 : NOM-002-SEDE-1997, 1997.9.4일자 관보
- 내용요약 : 변압기의 최소 안전기준 및 에너지절약요건 규정

12) 압력조리기구의 기술규정

- 대상품목 : 음식을 만들기 위한 압력 조리기구(21리터 이하 용량, 최대온도 127도 및 표준압력 0-0.15MPA 이상인 것)
- 제도유형 : 기술규격 및 시험방법
-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
- 근거규정 : NOM-054-SCFI-1997, 1998.1.14일자 관보
- 내용요약 : 압력조리기구(국내산 및 수입산 모두)의 기술규격 및 시험방법 규정

13) 페인트류 및 코팅제의 기술규정

- 대상품목 : 페인트 및 코팅제품
- 제도유형 : 기술규격(성분규제, 강제기준)
- 관할기관 : 환경자원수산부
- 근거규정 : NOM-123-ECOL-1997, 1998.2.17일자 관보
- 내용요약 : 솔벤트를 사용하는 페인트와 코팅제의 성분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최대허용치를 설정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에 모두 적용

14)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의 표시요건

- 대상품목 : 전기.전자제품 및 가정용 전기기구, 부품 및 액세서리, 컴퓨팅 소프트웨어(최종소비용) 등
- 제도유형 : 포장, 안내서 및 보증서 표시제도
-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
- 근거규정 : NOM-024-SCFI-1998, 1998.4.8일자 관보
- 내용요약 : 전기.전자 및 기장용 전기기구 등의 포장, 안내서 및 보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상업정보들을 규정(멕시코 영토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상품, 조립품, 중고제품 등에 적용되나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나 액세서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5) 완구 라벨링제도

- 대상품목 : 완구
- 제도유형 : 라벨링제도
- 관할기관 : 통상산업개발부
- 근거규정 : NOM-015-SCFI-1998, 1998.10.17일자 관보
- 내용요약 : 멕시코 영토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에 표시되어야 할 정보표시요건 등을 규정

V. 시사점

1. 진출 시 유의점

☐ 중남미 지역의 국가별 인증제도 확인 필수

- 유럽 지역과 다르게 중남미 지역에는 시행 중인 통합인증제도가 없으며 개별 승인/허가/인증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품목별로 상이한 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국가가 많아 시장 진출 시 해당 인증제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됨.

☐ 강제인증품목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중남미에서는 멕시코가 가장 앞선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산품 전반에 대한 통합 인증 제도(NOM)를 운영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해 부문별 강제 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강제인증 적용 품목은 42개이며 아르헨티나는 13개 품목에 대해 강제인증 또는 유통 승인을 요구함.

☐ 필요 시 국내에서 사전 등록 가능

- 아르헨티나의 경우 표준인증협회(IRAM: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제휴관계에 있어 국내에서 규격 시험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아르헨티나 제품인증취득 관련 정보는 <http://www.ktl.re.kr>에서 확인 가능함.

<참고>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SIC: Standard Information Center, <http://www.standard.or.kr>)을 통해 세계 각국의 인증제도 현황과 취득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음

-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은 국내기관과 제휴를 맺은 기관이 없어 국내에서 인증절차를 밟을 경우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2. 인증 활용 방안

☐ 상품 경쟁력 강화

- 최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결정적
- 기업 이미지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인증취득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강제인증 및 선택적인 인증 취득을 통해 긍정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이 제품 경쟁력 확보에 필수임.
- 또한 인증취득은 경쟁 상품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음.

□ 진출 장해요인 최소화

- 국가별 시장 진출 시 인증제도의 유무 파악 및 사전 취득은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출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인증 취득은 시장 진출 초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함.
- 이에 따라 시장 진출 이전에 지역별,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숙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럽, 미국과 달리 인증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획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협조가 중요함.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랜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8
06-044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006.8
06-045	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	2006.8
06-046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3) : 아시아편	2006.8
06-047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2006.9
06-048	금년 대중수출 둔화 원인 분석 및 전망	2006.9
06-049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9
06-050	일본 e-비즈니스 시장, TechNiCs로 승부하라	2006.9
06-051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TBT) 동향과 피해사례	2006.9
06-052	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	2006.9
06-053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	2006.9
06-054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4) -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 -	2006.9

06-055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북미편	2006.9
06-056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10
06-057	한-리비아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6.10
06-058	FTA 통한 분야별 해외기업 성과 제고사례 분석 - 미국과 FTA 체결국 기업을 중심으로 -	2006.10
06-059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 251개 일본 수입상 모니터링 조사 -	2006.10
06-060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구주편	2006.10
06-061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및 시장진출 확대 방안	2006.10
06-062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유럽편	2006.11
06-063	2006 세계의 틈새시장 틈새품목	2006.11
06-064	EU 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06.11
06-065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2006.11
06-066	Q&A로 살펴보는 EU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2006.11
06-067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러시아 및 동부유럽편	2006.11
06-068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아시아편	2006.11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06-022	중동아프리카지역 산유국의 주요 플랜트 개발정책 및 참여 유망 프로젝트	2006.9
06-023	중동아프리카지역 발주기관/에이전트/EPC업체 디렉터리	2006.9
06-024	독일 자동차 부품 OEM 납품 가이드	2006.9
06-025	KOTRA 해외마케팅사업 성공사례	2006.10
06-026	우리 기업의 국제협상.계약 실패사례	2006.10
06-027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10
06-028	중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2006.10
06-029	한 미 FTA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략	2006.11
06-030	러시아 비즈니스 로드맵 (개정판)	2006.11

□ 산업페이퍼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06-002	중국투자의 현주소와 성공전략 세미나	2006.8
06-003	한미 FTA, 새로운 대미진출 기회와 활용방안	2006.10
06-004	알제리 투자진출 설명회	2006.11
06-005	요르단 투자환경 설명회	2006.11

□ 산업연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3	폴란드의 주요 산업	2006.8
06-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산업	2006.8

작 성 자

- ◆ 전춘우 관장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 ◆ 지윤정 과장 (상파울루 무역관)
- ◆ 유성준 과장 (멕시코시티 무역관)
- ◆ 성기주 대리 (해외조사팀)

해 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중남미편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6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